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2013년 4월 pp.81~110
한국세무학회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김현동**

<요 약>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상당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세법과의 관계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관계적 측면을 크게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심도 깊은 고찰을 시도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에 대한 주주와 경영진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투자의 촉진을 위해 입법된 세법 규정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당해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것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사이에서 세법의 비중립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주주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세부담 측면에서 이익의 내부유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내국세입법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견해의 다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을 재벌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일부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법문제를 조세회피행위와 기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주제어> 기업지배구조, 대리인 비용, 지배주주, 소수주주,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본 논문은 2012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의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배재대학교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acckim@pcu.ac.kr, 042-420-5853

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2일

1차수정일 2013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21일

I. 서 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통일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의 주주·이사·경영자·종업원·투자자·고객·납품업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반면, 협의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하는 문제(대리인 문제)를 의미한다(강희갑 1999, 20 ; Allen 1998, 307-308).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국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회사법상의 논의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체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문제가 큰 사회·경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그간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많은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차입경영 및 기업확장, 분식회계 등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야기하였고, 그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서 관련 학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회사법상의 논의가 많았고, 이는 회사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법제에서의 논의 대상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법의 틀, 나아가 둘 내지 여러 법률의 관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법을 비롯한 다른 법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기업지배구조 사회후생적인 측면, 국가경제에서의 의의를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할 가치가 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여러 법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회사법 측면에서만 고찰되었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중복규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나라 밖에서는 세법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간의 영향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상당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세법과의 관계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의의를 고려하였을 때 세법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심도 깊은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논의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본격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관계를 몇 가지 주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Ⅳ장은 결론으로 그간의 논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II.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¹⁾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뜻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기업지배구조로 정의될 수 있다.²⁾ 가장 좁게는 경영자와 주주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의 핵심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s)³⁾의 문제이다. 두 당사자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주주·채권자·이사·경영자·종업원 등의 관계로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나 국가까지 그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

2. 논의의 의의

그렇다면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중국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국가경제의 건전화 및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 협의의 정의를 따를 경우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가치의 하락을 야기하고 극단적으로 회사를 소멸하게 한다. 대리인 비용은 경영자와 주주 또는 채권자와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수익력이 떨어지거나 자본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까닭이다.⁴⁾

기업의 수익력 저하는 여러 이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경영자의 사적 이익의 추구나 횡령, 과도한 성과급의 수령, 투자에 있어서 과소나 과대투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자본비용의 증가는 경영진과 주주,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경영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한다. 우선, 기업의 과도한 대리인 문제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를 꺼리게 한다. 이는 새로운 주주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자본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채권자가 빌려줄 때 받는 대가인 이자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도, 미래 자산의 위험도, 현재와 미래의 자본구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⁵⁾ 만

1) 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지배, 회사지배, 기업지배구조, 회사의 통치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통상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로 사용되므로 본고에서도 기업지배구조로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

2) 협의와 광의의 의미 역시 학자 간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3) 대리인 비용이란, Jensen과 Meckling이 1976년에 발표한 논문(Jensen and Meckling 1976, 305-360)에서 처음 정의된 것으로 주주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으며,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4)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가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김소연·신현한 2007을 참조.

5) 이하의 논의는 Brigham and Houston 1997, 20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약,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자가 채권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고 현재 발행된 회사채의 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당해 사업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에 따른 이익은 온전히 주주에게 귀속되나, 반대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채권자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영자가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받으려고 할 때 자본비용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다한 대리인 비용은 회사와 회사제도의 붕괴를 야기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이 가지는 중요도를 고려하였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3.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경영진인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는 까닭에 이사는 회사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원칙을 부담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상법 제399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경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구속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대리인 비용을 적게 발생시키려는 법적 장치인 셈이다.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업무집행권과 감독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하도록 하는 집행임원제도⁶⁾를 도입한 것도 대리인 비용의 감소를 목적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인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전술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의 곳곳에 두고 있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분식회계(window-dressing) 사건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파생상품투자로 발생한 손실 15억 달러의 손실을 감춘 엔론(Enron) 사태는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회계개혁법)⁷⁾의 발의를 촉발시킬 만큼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국내의 경우 대우그룹(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대우중공업)과 SK그룹(SK글로벌, SK해운)의 분식회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은 사적이익을 위한 경영권의 사용(스틸링, steal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⁸⁾ 스틸링의 유형은 앞서의 분식회계를 포함하여 횡령, 부당한 조건에 의한 회사와의 거래, 회사비용으로 위신 추구, 업무수행을 위한 과도한 회사비용의 지출, 자

6) 회사가 자율적으로 집행임원을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7) Sarbanes-Oxley Act로 불리우기도 한다.

8) 이에 관한 상세는, 이화진 2009, 11-12를 참조. 스틸링의 유형도 해당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격이 의심스러운 가족, 친지를 위한 인사권의 행사나 경영권의 승계, 증권시장에서의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 오너의 의중을 반영한 자벌적 위법행위 등이다.

하지만 시각을 내부로 돌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⁹⁾ 이러한 지적은 지배주주들의 통제와 소수주주의 보호 문제로 귀결된다.

4.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보호

미국이나 영국¹⁰⁾과 같이 기업의 규모가 매우 큰 까닭에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국가들의 기업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잘 설명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소유의 집중이 보편적인 소유구조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소유구조는 보편성을 갖기 어렵고 특히 개별국가의 경우를 설명하는데 있어 한계를 갖는다.¹¹⁾ 이러한 지분의 소유구조 하에서는 지배주주들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지배주주들의 통제와 소수주주의 보호가 논점으로 자리 잡는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예컨대 10%의 지분으로 기업(기업집단)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부적으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으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로 대별해 보기로 한다.

전자의 경우 대리인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상충 측면과 다르지 않지만, 지배주주들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구분된다(이창희 1996, 68). 다시 말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회사의 가치와 지배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¹²⁾ 계열회사에 지배주주의 지시에 의해 자금의 대여나 채무의 보증, 부의 이전거래 등이 그 예가 된다. 만약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의 전부가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이해를 쫓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지배주주가 반드시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이다.

9)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현실을 설명한 문헌으로, 이철송, 2009, 391-393.

10) 영국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에 관한 논의로, 안수현 2011, 49-55.

11) 관련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한 문헌으로, 이화진 2009, 7-8.

12) 주주의 지위로서 추구하는 이익과 경영자의 지위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들은 동일한 이익추구를 하지 않으므로 주주선호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선호 동일성의 한계를 소개한 문헌으로, 신석훈 2009, 36-38.

III.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1. 서설

이번 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관계를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와의 관계를 세법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투자에 대한 주주와 경영진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투자의 촉진을 위해 입법된 세법 규정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당해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것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사이에서 세법의 비중립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주주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세부담 측면에서 이익의 내부유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통해 확인해본다.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내국세입법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견해의 다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을 재벌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일부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법에 관해 조세회피행위와 기부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 장의 앞의 세 주제는 좁은 뜻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은 넓은 개념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법에 관한 고찰이다. 후술하겠지만 오늘날 기업의 속성과 사회, 경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을 단순히 주주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보다 넓게 이해하여 세법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와 세법의 문제는 넓게는 세법의 효율성과 중립성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세법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효율의 개념으로 통상 경제학의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¹³⁾이나 칼도- Hicks 기준(Kaldor-Hicks criterion)¹⁴⁾이 사용된다. 경제학상 효율의 개념이 세법의 입법상 지도원리 또는 원칙의 하나로

13) 파레토 효율이란 19세기 경제학자인 Vilfredo Pareto의 이름에서 딴 개념으로 하나의 자원배분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배분상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Katz and Rosen 1994, 409).

14)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화폐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화폐가치보다 더 클 때 그 변화를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선이라는 것이다(이준구 2004, 73).

사용될 만큼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입법된 법률이 많은 비판을 받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예는 적지 않을 만큼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많은 까닭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달성한다는 것도 결국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세법을 그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서의 타당성 역시 큰 틀에서는 효율성에 관한 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하의 논의를 통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법이 가지는 유효성이 얼마나 큰지 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2.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가. 투자에 대한 주주와 경영진의 입장

주주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경영자는 투자수익률의 증가에 대해서 주주와 반드시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경우 경영자는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¹⁵⁾ 대부분의 주주는 포트폴리오(portfolio) 측면에서 다변화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¹⁶⁾ 개별 회사의 상황에 전적으로 모든 의사판단을 맡기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실패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위험중립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 주주는 경영진이 위험의 고려없이 기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를 원한다.

반면, 경영진은 회사의 존속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이 경우 회사의 실패에 관해 위험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다. 심지어 투자가 회사가치를 감소시키더라도, 자신의 자리와 연봉의 인상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거나 도움이 되는 투자안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이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안이더라도 위험이 높은 수준이라면 해당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 전체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이 낮은 새로운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지금까지의 논의를 조세정책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본다면, 주주는 투자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를 선호하게 되고 경영진은 그렇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를 선호하

15) 아래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 논문으로, Jensen and Meckling 1976, 349-50.

16) ‘대부분’이라는 말이 개별 주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 자금을 투입한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증가하는 간접투자의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그 표현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17) 결과적으로 주주와 경영진은 회사의 위험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이 때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게 된다. 단순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이나 세율의 인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반드시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를 촉진하고자 입법된 규정이 원래 목적하였던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주주와 경영진 중 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해 상술하도록 한다.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대표적인 도구로 세율의 인하나, 가속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¹⁸⁾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투자를 촉진한다는 본래의 취지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세액공제나 가속상각제도가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우월하다(Musgrave & Musgrave 1998, 11). 세율인하는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였는지 그 여부와 관련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를 기집행한 기업도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하지만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된 세수입은 정부의 재정지출의 감소나 다른 세원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만약 다른 세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상 수단들에 대한 주주와 경영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선 주주의 입장에서는 세율의 감소를 선호하는데, 이는 종전 주식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투자세액공제를 입법하거나 공제액의 확대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은 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투자에 한정되므로 입법 또는 개정 이전에 집행된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제상의 혜택이 적용되는 범위의 한계는 모든 주식의 세전투자수익률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주식의 가치로 이어지게 된다. 한계생산비용의 감소로 인해 생산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판매가격의 감소를 야기¹⁹⁾하게 된다. 판매가격의 감소로 인한 세전투자수익률의 감소는 세제상의 혜택의 입법 이전과 이후 주식 모두에게 발생하게 되나, 기존 투자분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변함이 없다. 종국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반면,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집행된 투자나 새로운 투자 구별없이 모든 투자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게 된다. 따라서 법령 개정 이전의 종전 주식이나 법령 개정 이후 취득한 새로운 주식 모두에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물론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는 생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므로 그에 따른 이익의 감소가 발생하나, 법인세율의 인하가 전체 세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상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예상이 맞을 경우 종국적으로 종전 주식에도 세제

18) 현행법상 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19) 한편,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 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요소가격이 증가하여 세전투자수익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상의 혜택이 미친다.

한편, 경영자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새로운 투자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정책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식의 가치 훼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사의 존속, 연봉의 인상에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제, 즉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다. 투자촉진을 위한 세율 인하 정책의 실효성

앞에서는 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다른 규제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투자의 촉진을 위한 세율 인하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투자와 투기의 경제학적인 개념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는 새로운 자본재의 구입을 뜻한다(Mankiw 2007, 583).²⁰⁾ 따라서 공장이나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한다. 반면, 투기는 장래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해당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매매차익을 노리고 기발행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투기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Keynes)는 투기를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Keynes 1973, 158.).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시간이 경과에 따라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는 것을 뜻하고, 경제활동규모의 측정은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지표에 의한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천연자원, 물적자본, 기술 등이 일컬어지는데, 투자는 물적자본의 증가와 기술의 진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제학 개념상의 투자에 있다할 것이다.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이 시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부담을 낮추면 기업의 입장에서 낮춰진 세부담만큼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는 식의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²¹⁾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위 논리의 진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분석에 있어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은 투자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개입된다.

경영자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법인세만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주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 나아가 다른 요소까지 고려될 수 있다.

20) 소비재의 구입에 소득을 지출하는 ‘소비’와 구별된다.

21) 전통적으로 세율의 인하는 투자, 저축, 노동력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Engen and Skinner 1996, 617).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를 가정해보자. 세후소득이 9천만 원(세전과세소득은 1억 원으로 10%의 세율이 적용)인 갑법인이 있는데, 당해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소득 전액을 갑법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주 을에게 배당한 후 세전수익률이 10%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²²⁾ 두 번째 안은 배당하지 않고 기업내부에 유보하여 세전수익률이 10%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주주 을이 개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첫째 안에서 을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로스업(gross-up)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법상 11%의 배당가산율이 적용되어 배당소득금액은 99,900,000원이 된다. 을에게는 다른 소득이 있고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은 최고 세율이라고 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한계세율인 35%가 적용되어 세액은 34,965,000원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배당세액공제액인 9,900,000원이 차감된 25,065,000원이 최종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이 된다. 64,935,000원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5년 후에는 104,578,467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계산의 끝이 아니다.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배당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예컨대 사업소득일 경우(편의상 경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36,602,463원을 공제한 67,976,004원이 최종적인 세후소득이 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9천만 원이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5년 후 144,945,900원이 된다.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전액을 배당할 경우 주주 을은 79,770,976원을 받게 된다.²³⁾

주어진 위의 가정에서는 5년 후 투자수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보다 기업내부에 이익을 유보한 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두 번째 안이 우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역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율이 6%~38%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주주에게는 첫 번째 안이 수익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갑법인에 이익을 유보하여 투자를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소득세율보다 낮아지기 전까지는 바로 앞의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는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당된다.

그렇다면 세율의 인하를 통해 투자의 확대라는 논리는 위의 사례에서 유효하다.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증가하는 이익이 갑법인을 통해 투자되던지 아니면 배당되어 투자되던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례에서 갑법인이 내부에 유보된 이익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고, 주주 을 역시 ‘투자’를 한다고 전제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갑법인이나 주주 을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재의 구입을 통한 수익의 실현(투자)뿐만이 아니라 타법인의 유통주식의 매수(투기)를 통해 수익

22) 이 경우 투자는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23) $[130,451,310 + 14,349,644(\text{배당가산액})] \times (1 - 0.35) - 14,349,644 = 79,770,976$ 원이 된다.

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례에서의 가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까지 고려하였을 때는 더욱 문제는 복잡해진다. 언론을 통해 외국투자자본이 지배주주인 회사의 경우 막대한 이익이 배당으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국내의 투자대상이 국외의 것보다 수익률이 우월하다면 배당된 이익이 다시 국내에 재투자되는 것이 외국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나, 그 역의 경우에는 국외로 유출된다. 설사 국내 투자대상의 수익률이 높더라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개인소득세율의 차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노조문제 등과 같은 투자국의 경제·사회적 분위기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할 때 기업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배당, 이익의 유보와 조세의 비중립성

앞의 사례에서 법인세율이 주주에 적용될 소득세율보다 낮다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내부유보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행법상 법인주주나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되는 것,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²⁴⁾ 등도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는 것을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일부 내국법인²⁵⁾에 대해 적정유보 초과소득²⁶⁾에 대한 법인세 과세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 폐지된 바 있다.²⁷⁾

24) 기업에 유보된 이익만큼 기업가치가 증가된다고 가정한다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세되지 않는 까닭에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25)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또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을 말한다. 2001.12.31. 이전의 옛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26) 적정유보소득이란 다음의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하였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액,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50% (2) 자기자본의 10%. 2001.12.31. 이전의 옛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27) 비교법적으로 미국 내국세입법은 유보이익에 대해 세금(유보이익세, accumulated earnings tax)을 과세하고 있다. IRC §531. 하지만 유보이익세는 법인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필요(reasonably anticipated needs)에 의해 유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IRC §533 (a), §537 (a). 여기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필요는 유보된 이익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specific), 분명하며(definite), 실행가능한(feasible) 계획을 뜻한다. 유보된 이익은 즉시 집행될 필요없이 여러 정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집행되면 된다. Treas. Reg. §1.537-2(1)(b). 한편,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의 개념은 ‘선의의 사업 확장’(bona fide expansion of business)을 포함한다. Treas. Reg. §1.537-2(b)(1). 정리하자면 사업확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장의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익의 유보에 대해 배당보다 상대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는 자본시장 육성,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과 유보는 기업의 저축으로 곧 투자의 확대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에 대해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김진수 2004, 163), 배당된 소득이 모두 소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내유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주주들이 그것의 실현과 관계없이 소비를 높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곽태원 2000, 353-354), 소득에 대한 역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창희 1996, 77) 등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의 태도는 대리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비판과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다. 경영자는 이익의 내부유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함이다(Arlen & Weiss 1995, 349-351). 사내유보된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증거를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수반되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투자집행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투자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진의 내부유보의 선호는 경영보상성과의 지급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배당은 주식가치의 하락을 야기하고²⁸⁾ 이는 미행사된 스톡옵션(stock option)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내부유보된 이익을 경영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시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주주는 세부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수익은 기업가치와 관련되고 이는 다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배당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의 처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배당과 주식의 매도라는 두 가지 방법 중 주주는 자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여부,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과세소득구간 등이 고려된다. 결국 기업의 배당정책에 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 기업내부에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증가하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비용은 감소되는 세부담과 상쇄될 수 있어 종국적으로 주주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주주의 입장과 관련된 규정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당해 규정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쉽게 말하자면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의 취득원가를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원가(carryover basis)가 아닌 평가증한 가액(step-up basis)으로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평

28) 주식배당 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락(配當落)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가증에 관한 규정과 이익의 내부유보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이에 대해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예컨대, A법인의 주주인 갑씨가 사망하였다고 할 때 갑씨의 주식은 갑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취득원가가 100,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2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속인은 200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한다. 만약 갑씨가 사망 직전 당해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였고 이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주식매도에 따른 양도차익(200-100)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고 난 뒤,²⁹⁾ 다시 200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취득한 주식은 추후 시가가 350일 때 매도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를 경우 이 때의 취득원가는 100이 아닌 평가증된 200이 될 것이므로 결국 사망 직전 주식을 판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100(200-100)은 영원히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한다면, 당해 규정은 이익의 기업 내 유보를 권장하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한 주식의 동결효과(lock-in effect)와 사회적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³⁰⁾

미국의 내국세입법은 우리나라 법과 같이 평가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³¹⁾ 우리법과 달리 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즉,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수증자의 취득원가로 carryover된다.³²⁾³³⁾ 증여와 상속에 의한 취득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세법상의 취급은 미 의회가 사망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시기가 아니라고 본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Mcdaniel et al. 2008, 240).³⁴⁾ 하지만 증여와 상속에 대한 다른 취급은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나아가 상속재산을 평가증하는 것은 자본이득의 과세로부터의 영구적인 면제를 야기한다.

2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30) 동결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에 관한 상세는, 이창희 2012, 760-761을 참조. 한편, 평가증에 관한 규정 자체가 동결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Kiefer, 1990, 75-94를 참조.

31) IRC §1014(a). 201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IRC §1022가 적용되어 증여와 같이 carryover basis가 적용된 적이 있었다.

32) IRC §1015(a).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산을 처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와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Carryover basis에 관한 배경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로, Taft v. Bowers, 278 US 470, 479-480 (1929).

34) 미 의회도 이러한 입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무산된 바 있다. Tax Reform Act of 1976, Pub. L. No. 94-455, §2005, 90 Stat. 1872, Revenue Act of 1978, Pub. L. No. 95-600, §515, 92 Stat. 2884, Crude Oil Windfall Profit Tax Act of 1980, Pub. L. No. 96-223, §1, 94 Stat. 229.

4. 배당소득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1) 규정의 연혁

법인 간 배당과 관련하여 출자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은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어 왔으나,³⁵⁾ 기관투자자(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등)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서 제외하다가 일부 금액만을 제외하는 등의 개정을 거쳤다.³⁶⁾³⁷⁾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고 있었다. 이는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라는 장치를 통해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원칙적으로 법인 간 배당에 대해 과세를 한 옛 법인세법 규정은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정책적 목적 또는 법인실제설에 터잡아 마련되었었다. 그러다가 정책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마련되는데,³⁸⁾ 이는 IMF체제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1999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의 대강은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90%, 60%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이었다.³⁹⁾ 하지만 지주회사에 한해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반영하여 지주회사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하는 제도가 2000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마련된다.⁴⁰⁾ 이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정도를 결정하는 익금불산입율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었다.

한편, 자회사의 재출자 억제에 위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장치가 1999년 개정법에 마련되어 있었다.⁴¹⁾ 즉,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 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지주

35) 하지만 1970년대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었다. 1976.12.22. 법인세법 제24조의4.

36) 1979년 최초로 본문의 사항이 법에 도입되었다. 1979.12.28. 개정 법인세법 제15조. 이후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90%, 80%)만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몇 차례 개정을 이루어졌다.

37) 당해 규정은 증권시장의 육성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3누398 판결.

38) 1999.12.28.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39) 차입금이 있거나 자회사가 계열회사나 타법인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을 일부 배제하였다. 1999. 12.28.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40) 2000.12.29.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41) 1999.12.28.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다시 재출자 비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법인 간 이중과세 조정이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2) 현행 규정

현행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우선 지주회사⁴²⁾가 아닌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의 제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금액을 포함) 중 출자 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⁴³⁾을 수입배당금액에 곱한 금액에 해당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이자⁴⁴⁾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⁴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 40% 이하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을,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8의2 제1항). 자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지분율이 40%(자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 20%) 이상 80% 이하이면 80%를, 80%를 초과하면 100%를 각각 익금불산입률로 한다.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법인세법 제18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42)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18의2 제1항.

43) 익금불산입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출자받은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출자받은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30% 이하	50% 이하	30%
30% 초과 100% 미만	50% 초과 100% 미만	50%
—	100%	100%

44)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직접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0%) 이상을 해당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일 것 ②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일 것. 법인세법 제18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2 제2항.

나. 기업지배구조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시 배당을 받는 법인의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의 논의를 벗어나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세법학계에서의 배당소득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와 이중과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관한 것에 주로 맞추어져 있었다.⁴⁵⁾⁴⁶⁾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해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이 기업집단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미국의 내국세입법상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 규정과 그에 관한 논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재벌규제의 수단으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⁴⁷⁾에 속하는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⁴⁸⁾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세법의 관련 규정의 대강을 살펴본 후 그에 관한 견해의 다툼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Act)은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개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 반면, 법인 주주가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 소득계산에 있어 공제가 된다.⁴⁹⁾ 구체적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 배당소득의 70%가 공제되고, 지분율이 20% 이상 80% 미만인 경우 80%가 공제된다. 지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액이 공제된다.⁵⁰⁾ 법인의 소득

45) 관련 연구로, 옥무석 2000 ; 이우택 2000 ; 한만수 2002 ; 법인 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제대로 조정해 주고 있지 않아 해외지주회사 이용의 제한 문제와 개선에 관한 연구로, 백제흙 2009.

46) 사실 미국의 기업 간 배당과세에 관한 논의도 그간 학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Morck 2005, 169).

47)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하략>

48)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26.

49) IRC §243.

50) 법인이 종속회사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결납세를 고려하였을 때는 종국적으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연결과정에서 배당소득이 전액 제거되는 까닭이다. 한편, 이러한 점에서 기업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두고 있지 않는 이유를 연결납세제도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은 중국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같은 소득이 세 번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법인 주주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앞의 규정은 이러한 세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목적을 갖는다(Lind et al. 2008, 187). 최고 법인세율이 35%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최대 실효세율은 10.5%가 된다($30\% \times 35\%$).

미국 세법⁵¹⁾은 원래 기업 간 배당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회사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30년 중반 이후 공제한도를 줄이는 입법이 이루어진다.⁵²⁾ 이와 같은 입법조치는 대공황 발생과 그에 따른 뉴딜(New Deal)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크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자 개인소득세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누진세율을 기업의 과세소득의 계산에도 도입되기를 원했던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은 자회사를 두어 법인소득을 줄임으로써 누진세율의 본연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과세규정의 입법을 원했다.⁵³⁾ 둘째, 지주회사와 같은 피라미드식 출자구조(stock pyramids)⁵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피라미드식 출자구조가 야기하는 경제적 폐단은 척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던 까닭이다.⁵⁵⁾

피라미드식 출자구조와 기업 간 배당과세 규정의 관계에 관해서는 견해의 다툼이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폐지⁵⁶⁾와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 피라미드식 출자구조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있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다(Roe 1994 ; Morck, 2005).⁵⁷⁾ 반면, 기업 간 배당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실제로 크지 않고 다른 법률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으므로 배당과세규정을 피라미드식 출자구조가 사라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Schaffer 1979, 164).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부담은 둘 이상의 법인을 둠으로써 이익을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나의 법인을 둘 때보다 낮은 한계

51) 원래 미국에는 개별의 여러 Revenue Act가 존재하였으나, 1939년에 이르러 Internal Revenue Code로 일원화되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단일법전 체계를 갖추게 된다. 단, 관세(Custom Duties)는 연방법전 Title 19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52) 1935년 공제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되었다. Revenue Act of 1935 § 102(h). 이듬해인 1936년에는 다시 85%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 Revenue Act of 1936 § 26(b).

53)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H. R. Rep. No. 1681, 74th Cong., 1st Sess. 3 (1935).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15088>>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54) 통상적으로 피라미드의 외견과 같이 하나의 회사가 지분소유를 통해 다층적인 자회사를 지배하는 소유 구조를 뜻하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는 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엄격히는 실정법상의 지주회사와 의미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넓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같이 직·간접적인 상호출자 등에 의해 지배 주주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전체 회사에 미치는 지배구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55) 이에 관한 상세는, Morck 2005, 148-149.

56) Revenue Act of 1934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연결납세제도는 Revenue Act of 1940에 의해 부활한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한 연구로, 이기욱 2011.

57) Morck 교수는 법인 간 배당과세규정을 미국의 피라미드식 지주회사구조가 사라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대표적인 학자이다(Bank & Cheffins 2010, 439).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감소하는 세부담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후자의 견해 또한 논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미국의 상황은 에너지부문을 제외하고는 피라미드식 출자구조를 보이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 에너지부문에서의 지주회사체제의 소멸은 공익사업지주회사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 PUHCA)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규정 개정 후 소유구조의 개편을 위한 주식의 대량매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이다(Bank & Cheffins 2010).

이와 같이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미국에서 피라미드식 출자구조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⁵⁸⁾ 따라서 국외의 사례를 대상으로 제시된 일부의 견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관련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선부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집단이 야기하는 경제적 폐해의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세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역의 적합성 측면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설사 세법이 기업집단에 의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쟁법적 규제나 회사법상 수단이 아닌 세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공정거래법⁵⁹⁾이 우선적으로 우려할 문제를 세법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⁰⁾

물론 오늘날 세법이 국고주의적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책수단으로서의 태양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은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앞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의 형성에 있어 관련 세법규정의 영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견해의 다툼이 있거나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립성의 원칙은 더욱 견지되어야 한다.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1999년의 법인세법 개정은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용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세법을 활용한 것으로 일견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중립성의 원칙으로 회귀한 것이다.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후속

58) 실증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 관련 데이터의 부족, 법인 간 배당을 포함한 다수의 세법상 관련 규정을 고려할 필요성 등이 그 예가 된다(Bank & Cheffins 2008, 159-160).

59)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0) 물론, 경쟁법이나 회사법의 강행규정을 통한 규율보다 자율규제장치(예컨대, 조세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 규제목적의 달성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법률 간의 고유의 입법 목적과 특성, 법률가나 학자들의 전문연구분야(예컨대 상법과 경쟁법, 세법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법률의 개정빈도와 관련된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중복규제나 과잉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제도 환경을 무시한 채, 직접규제와 경제적 인센티브와 같은 자율규제장치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만을 가지고 그 우위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개정까지 이루어져 완벽하게는 아니나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법규정은 중립성의 원칙에 최대한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은 세법을 다시 중립성의 원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 만큼 이에 관한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경제학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이 야기하는 경제적 폐해의 근본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원적인 고찰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아닌 현상의 외연에 천착한 법령의 개정은 입법취지의 달성뿐만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까닭이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벌의 문제는 지배주주의 통제와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회사법적 규제를 통해 기업집단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지, 해당 법률들은 애당초 그러한 규제목적의 달성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갖는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이다. 이에 관한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검토(이철송·조성봉 2005, 67)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비법률적 경영 관여는 상법 제401조의2(61)(62)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이 각자의 영리성에 입각하지 않고 기업집단 전체 혹은 공통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문제는 회사의 사단성 및 법인성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것이 아닌, 주주들의 책임추궁의 용이성에 관한 문제로 봄이 타당한데, 이미 증권거래법에서 대표소송의 요건을 현저히 완화해 놓은 이상, 주주들의 권리의식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세법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개관

미국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고 한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지는 꽤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다. Enron의 회계부정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공공성 측면의 고려, 다시 말해 CSR 논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을 단순히 주주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

61)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62) 당해규정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보기에는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CSR에 대한 일의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예컨대 경제적·비경제적 책임, 법률적·비법률적(도덕적) 책임의 영역을 어떻게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다. UN이나 국제표준기구(ISO),⁶³⁾ OECD나 여러 국내외 문헌에서 설명되고 있는 CSR의 정의들을 종합해보자면, CSR은 기업과 주주를 비롯한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해볼 수 있다. 회사의 본질 내지 기업지배구조 이론상의 주주중심주의⁶⁴⁾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⁶⁵⁾에서 CSR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그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SR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CSR은 기업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윤의 극대화 추구를 넘어서 주주를 위해 이익을 실현하고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Whitehouse 2005, 148).

CSR은 이윤추구를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존의 명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측면까지 논의의 범위로 삼는다. 물론 CSR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나아가 CSR을 긍정하는 측면에서도 자율규제⁶⁶⁾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규제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다툼도 있다.⁶⁷⁾ 하지만 CSR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는 CSR을 긍정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고 국제적 규범화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법이나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실정법상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CSR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는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Enron의 회계부정에 대한 입법적 대응인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를 CSR과 관련된 강행법규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편, 자율규제는 회사법상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관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주주중심주의에 따르면 투자자는 단기적 경영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최단의 기간 동안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원가 절감, 아웃소싱이나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공장이전 등 각종 구조조정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결국 CSR의 측면에서 이러한 주주 모델은 한계를 갖는다.

63) ISO에서의 CSR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 박관훈 2011을 참조.

64)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model)는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지배구조가 특징적인 영미법계 국가(common law countries)에서 발달되었다.

65) 이해관계자중심주의(stakeholder model)는 주로 대륙법계 국가(code law countries)에서 발달된 것으로 기업의 주요 주주는 설립자와 그 가족·은행·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다.

66) 자율규제의 현황에 관해서는, 이동승 2009, 314-316을 참조.

67) CSR에 대한 이론과 찬반논쟁에 관해서는, 송호신 2010, 143-149를 참조.

나. 세법상 쟁점

(1) 조세회피행위

CSR에 대한 법적규제와 관련하여 세법적 측면에서의 살펴볼 것으로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그 밖으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위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지 않지만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조세회피⁶⁸⁾는 법인이나 개인들을 막론하고 추구되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조세의 복잡성과 법적 허점, 세계화와 금융기법의 발달, 경쟁적 환경에 따른 비용절감의 모색 등을 원인으로 조세회피행위는 날로 커지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세는 순자산의 외부유출을 뜻하므로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는 조세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은 실질과세원칙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입법론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⁶⁹⁾

조세회피와 관련한 문제로 최근 국내외에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ggressive tax planning : ATP, 이하 ‘ATP’라고 한다)와 그에 대한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ATP의 정확한 법적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조세회피 중에서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ATP와 국제적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14일~15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OECD Forum on Tax Administration)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의 색출 및 제지 등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⁷⁰⁾이 선포된 바 있다. 서울선언은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인식하여 조세회피문제의 해결마련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CEO)나 이사회 같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 및 감사위원회의 조세전략에 대한 관심제고와 책임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와 조세의 상관관계를 환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2004년판)의 증보를 향후 진행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 점에서 조세문제와 CSR의 관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SR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⁷¹⁾이나 기존 문헌은 세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사실 CSR과 조세

68) 조세회피의 개념적 이해는 탈세와 절세 등 인접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제고될 수 있다. 탈세는 위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고, 절세는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조세회피는 위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지 않지만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상세는, 안경봉·오윤 2008, 243-245를 참조.

69) 관련 연구로, 안경봉·오윤, 2008.

70) 서울선언의 원문은 <<http://www.oecd.org/tax/taxadministration/seouldeclarationoecdtaxadministratorstojoinforcesinfigh tingtaxnon-compliance.htm>>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주중심주의에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⁷²⁾에 최우선적인 고려를 하게 되나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서는 종업원과 채권자, 나아가 국민과 국가까지 기업과 직·간접적인 상호작용관계에 놓인다. 이해관계자중심주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시도는 제재되어야 할 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Enron의 사태와 같이 조세회피행위가 과세당국에 적발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주주만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국고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며, 세수의 부족분은 결국 다른 기업 내지 국민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OECD Principles on Corporate Governance’에서 이사회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⁷³⁾된 것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문제는 CSR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가능하다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이익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세회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후적인 적발체계가 아닌 경영자나 이사, 지배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미리 인식하도록 하는 조세회피의 사전적 억지체계를 뜻한다.

이러한 방법은 아래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복잡한 경제현실을 법이 앞서서 모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과 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절감유인을 가지는 기업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과세당국이 설사 모든 역량을 조세회피행위적발에 쏟아 붓더라도 모든 유형의 실질적인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 세법상 주주나 이사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조세회피전략을 추구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조세처벌법상 주주나 이사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조세처벌법은 위법한 조세일탈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법의 테두리에 있는 조세회피행위는 규율의 대상이 아닌 까닭이다. 다른 한편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의 납세의무의 확장에 관한 규정이다. 법인(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⁷⁴⁾가 부족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71) 예컨대, UN의 Global Compact for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ship의 10대 원칙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GC_brochure_FINAL.pdf>

72) 우리나라의 일부 재벌의 경우 지배주주 내지 대주주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73) OECD Principles on Corporate Governance, VI. C. <http://www.oecd.org/corporate/corporateaffairs/corporate_governanceprinciples/31557724.pdf>

74)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동 규정에 따르면 조세회피행위의 적발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이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한 과점주주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2006년 미국의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심의위원회)는 불확실한 조세위험(uncertain tax position)과 관련하여 FASB Interpretation No. 48⁷⁵⁾(이하 “FIN 48”이라고 한다)을 발표한 바 있다. FIN 48은 과세당국이 기업이 취한 tax position⁷⁷⁾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tax position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50%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기업은 결정 내지 결정에 따른 추정세액 등을 장부에 우발채무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⁸⁾ FIN 48의 시행에 따라 ATP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의 경우 시행 이전에 비해 관련 채무의 증가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FIN 48은 ATP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다. 한편, IRS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Schedule UTP’ (이하 ‘UTP’라고 한다)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여기서 네 가지 요건이란 ① Form 1120, 1120-F, 1120-L, 1120-PC 중의 하나를 신고하는 법인일 것, ② 자산규모가 \$1억 이상일 것, ③ 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납세자일 것, ④ UTP 보고 대상 Tax Position이 하나 이상 존재할 것을 말한다. ④의 tax position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연방소득세 신고서에 tax position을 취하였고, 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에 tax position과 관련된 준비금(reserve)을 계상하였거나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송을 예측하여 tax position에 관련된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UTP는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 불확실한 조세위험과 관련된 준비금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인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재무제표에 tax position과 관련된 준비금(reserve)을 계상하였거나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소송을 예측하여 tax position에 관련된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UTP와 FIN 48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UTP 도입은 납세자인 기업에 납세준응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조세회피행위의 본질적인 속성과 실정법의 한계에 따른 현실은 UTP의 문

75) 현재는 FASB ASC 740-10에서 규정되고 있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체계의 복잡성, 기업회계기준을 구성하는 여러 문서 간 형식의 비일관성, 그에 따른 해석에서의 어려움 등에 관한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어 FASB는 2007년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을 시행하였다.

76) IASB도 불확실한 조세위험에 관한 규정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77) Tax position이란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등을 측정하는데 있어 과거 사업연도 또는 향후 사업연도의 세무신고상에 채택되었거나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태도 내지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78) 법인세 회계에 관한 FASB Statement No. 109는 법인세채무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보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무상 불확실한 조세위험과 관련된 기업들의 보고는 매우 다양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 FIN 48의 채택을 이끌었다.

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한 과세당국에 불확실한 조세위험에 관한 정보제공을 단순히 비용편익적인 분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CSR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로 귀결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세무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되도록 피하고 싶겠지만,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식됨이 오히려 바른 태도가 아닐까 한다. 이 점에서 UTP의 우리나라로의 도입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2) 기부

(가) 기부행위에 대한 현행 세법의 태도

현행 법인세법은 기부금의 종류를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한도를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⁷⁹⁾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는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손비인정의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한도를 높게 인정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법정기부금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또는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종전에는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10%로 확대된 바 있다.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나) CSR과 기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부금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뜻한다.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기

79) 단, 종전의 ‘특례기부금’은 2011.6.30.까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1.7.1. 이후 지출되는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도 같다.

부는 순자산의 감소를 유발하지만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등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까닭이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하지만 같은 조문에서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해석론을 떠나 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한 현행 규정의 정당성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이 질문은 기부문화의 확대와 그에 보조를 맞춘 세법의 역할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에서 다소 우문으로 들릴 수도 있다. 물론 회사법상 외국의 입법례나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박찬우 2004, 187)에 따르면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 등에 대한 기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⁸⁰⁾ 하지만 상법상 회사의 기부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 원래부터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었다. 회사의 목적은 단지 자신의 이익추구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자선행위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초기판례가 취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한철 1998, 239).⁸¹⁾ CSR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기부행위를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국내 외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기부가 회사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회사법상 관점을 벗어나 세법적 측면에서는 다소 정교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기부금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세법규정은 조세지출(tax expenditure)에 해당한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간접적인 지출의 발생 내지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뜻한다.⁸²⁾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규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학자 간의 이론적 논쟁⁸³⁾이 있었고, 이 중 일부 견해(McDaniel 1972, 377)에 따르면 기부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세수입으로 편입되어 다시 공익성 단체에 배분되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는 점, 기부와 관련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자율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고, 그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도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쫓아 국가의 세수입에 편입되어 다시 배분되는 것과 효과면에서 차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하는 모든 행위를 손금으로 인정해 줄 수는

80) 우리나라 회사법은 기부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81) 하지만 현재 미국의 모든 주회사법은 사회·문화적 목적의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82) 세율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100억 원을 누구에게 주었는데 이를 손금산입해 준다는 말은 사실 그는 50억을 낸 것이고 국가가 50억을 대준 셈이 되는 것이다(이창희 2012, 948).

83) 이에 관한 상세는, 이은미 2009, 398-402를 참조할 것.

없다.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기부금 대상단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편향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내세우거나,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도 일부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행위, 또는 공익단체이더라도 공익성 사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 납세자들은 자신의 세금이 그러한 곳에 지원된다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점을 국가는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납세자이자 이해관계자인 국민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기부행위를 동의하더라도 그 대상단체의 타당성 내지 주주의 가치관에 따라 기부의 개별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기부에 의해 회사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당장의 이익이 감소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주주는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기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⁸⁴⁾

우리 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공제대상단체를 법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단체 외의 곳에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은 손금불산입된다. 하지만 현행법이 상술한 바와 같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⁸⁵⁾

IV. 결 론

세법이 기업지배구조를 염두에 두고 입법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세법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입법된 법규정들이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세법과 기업지배구조는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

본고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세법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와 세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우선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 그에 관한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고는 기업지배구조와 세법에 관한 시론(試論)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회사법상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렇기에 세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개입에 따른 중복 또는 과잉규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세법상의 논의에서도 지면의 한계로 본고에서 다루지

84) 기부의 허용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고 회사의 기부행위가 주주의 이익, 즉 회사의 이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회사법에 존재하는 기부허용규정에 아무런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관련’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최기원 2009, 90).

85) 그러한 점을 지적한 예로, 이창희 2012, 948 ; 김도승 외 2011, 154-156.

않은 다른 중요한 많은 주제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와 세법의 문제는 넓게는 세법의 효율성과 중립성에 관한 논의로 귀속된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달성한다는 것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법을 그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서의 타당성 역시 큰 틀에서 효율성에 관한 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 만약 세법이 기업지배구조에 어떠한 식이든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그 취지대로 실현됨에 있어 여러 장애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음을 제Ⅲ장에서 다룬 주제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건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이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됨이 옳다. 다시 말해 중립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을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세법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완벽히 통제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희갑. 199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입법론적 검토”. 상장협 제39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곽관훈. 2011.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사법”.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 곽태원. 2000. 조세론. 박영사.
- 김도승·김현동·이전오. 2011. 기부금 조세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김소연·신현한. 2007. “기업지배구조 문헌연구”. 금융학회지 제12권 제3호.
- 김진수. 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박찬우. 2004. “회사의 기부행위”. 기업법연구.
- 백제흠. 2009.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XV-2.
- 송호신.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적 구현”.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 신석훈. 2009.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범경제학적 접근-우리나라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안경봉·오 윤. 2008.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XIV-1.
- 옥무석. 2000. “지주회사제도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IFA 제17차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동승.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권.
- 이우택. 2000. “지주회사의 유용성과 연결납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5호.
- 이은미. 2009.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 이준구. 2004.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 이화진. 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 이창희. 1996. “재벌문제와 세법”. 상사법연구 제15권 제1호.
- _____. 2012. 세법강의(제10판). 박영사.
- 이철송. 2009. 회사법강의(제17판). 박영사.
- 이철송·조성봉. 2005.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사법 개정 방안”. 기업지배구조와 출자규제 제도의 법리적, 실증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한만수. 200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연구회 사단법인 창립기념 추계 학술세미나.
- 한 철. 1998. “기업의 자선적 기부행위의 정당성”,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회월 박길준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정문사.
- 최기원. 2009. 신회사법론(제13대정판). 박영사.
- Donald W. Kiefer. 1990. Lock-in Effect Within a Simple Model of Corporate Stock Trading, National Tax Journal 43.

- Eric Engen and Jonathan Skinner. 1996.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National Tax Journal*, Vol. 49, No. 4.
- Eugene F. Brigham and Joel F. Houston. 1997.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ement*(eight edition), The Dryden Press.
- John Maynard Keynes. 1973.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The Collected Writings of J. M. Keynes. Vol. VII.* Macmillan.
- Paul R. McDaniel. 1972. Federal Matching Grants for Charitable Contribution : A Substitute for the Income Tax Deduction, 27 *Tax Law Review*.
- Paul R. McDaniel et al. 2008. *Federal Income Taxation – cases and materials – . sixth edition.* Thomson Reuters.
- Randall Morck. 2005.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 : The Double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Other Incisive Uses of Tax Policy.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ume 19.* NBER.
- Richard A. Musgrave & Peggy B. Musgrave. 1998.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439 ; Tax Law Design and Drafting volume 2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chaffer. 1979. The Income Tax on Intercorporate Dividends, 33 *Tax Lawyer*.
- Stephen A. Lind et al. 2008. *Fundamentals of Corporate Taxation – cases and materials*(seventh edition). Thomson.
- Steven A. Bank and Brian R. Cheffins. 2010. “The Corporate Pyramid Fable”, *Business History Review* Vol. 84. No. 3.
- _____. 2007. “Tax and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ax and Corporate Governance, MPI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Volume 3.*
- Mankiw. 2007. *Principles of Economics. Fourth Edition.* Thomson.
- Mark J. Roe. 1994. *Strong Managers, Weak Owners : The Political Roots of American Corporate Fin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ichael C. Jensen and William H. Meckling. 1976. “The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 Michael L. Katz and Harvey S. Rosen. 1994. *Microeconomics*(second edition). IRWIN.
- Whitehouse. Lisa. 200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Regulation : The Argument from Democracy.” In *Governing the Corporation, Regul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in an Age of Scandal and Global Markets*, ed. Justin O’Brien, Chichester : John Wiley & Sons.
- William T. Allen. 1998. The Corporate Director's Fiduciary Duty of Care and Business Judgement Rule Under U.S. Corporate Law, in :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Oxford.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Hyun Dong Kim*

—〈Abstract〉—

There i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on the intera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even though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are very closely interrelated. Regarding this aspect,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law by considering four topics.

First, after contemplating the stance of management and shareholders about investment, this study prove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for enhancing investment depends on the final decision-maker.

The second topic is about the partiality between retention of earnings and dividends and the agency costs. Especially, it is confirmed that shareholders could choose retention of earnings despite agency costs because tax burden would decrease.

Third, tax treatments of inter-corporate dividends in Korea and U.S. are examined and it is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relation between taxation of inter-corporate dividends and corporate pyramids.

The last discussion is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ax law from the view point of tax avoidance and donation.

〈Key words〉 Corporate Governance, Agency Costs,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Corporate Dividen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ssistant Professor, Ph.D., C.P.A.,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ai Chai University.